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30

발의연월일: 2025. 2. 18.

발 의 자:이상휘・이헌승・김정재

서일준 • 최수진 • 박성훈

이만희 • 박상웅 • 김장겸

윤영석·박정훈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동물의 보호와 유실 · 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하고, 등록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등록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동물 등록을 위해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직접 삽입하는 데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지목되고 있는데, 최근 등록 시 부착한 마이크로칩을 생살을 찢어 제거한 후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동물 보호가 아닌 동물 학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.

이에 시행령에 근거하여 사용하고 있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 방법 외에 동물혈액·침 등을 통해 유전자를 분석하는 유전자검사 정 보 등록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 등록 시 동물에 대한 안전 및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,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(안 제15조제1항 및 제7항). 법률 제 호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본문 중 "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"를 "유전자검사 정보 등록,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"방법·절차"를 "절차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유전자검사 정보 등록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)	제15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)
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	①
동물의 보호와 유실・유기 방	
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	
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	
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	
청장에게 <u>등록대상동물을 등록</u>	<u>유전자검사 정보 등</u>
<u>하여야</u> 한다. 다만, 등록대상동	록,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
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	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
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	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
에 따라 시·도의 조례로 정하	<u>야</u>
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	
하다.	
	.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	⑦
및 <u>방법·절차</u> , 변경신고 절차,	<u>절차</u>
등록 말소 절차, 동물등록대행	
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	
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그 밖에	
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	

o]	조례로	저하다
=	<u> 오데노</u>	78 YE 14.
